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조운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병일

판 결 선 고 2025. 11.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4. 27. 15:40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162-17에 있는 33번 국
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주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
라 시속 약 1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킬로미터의 도로이고 다른 자동차들의 통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 초과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장나 위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44세) 및 피해자 C(여, 69세)으로 하여금 위 레이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B가 사망하고,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B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위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가족의 상실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C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 및 피해자 C에게 형사합의금(피해자 B의 유족에게



8,000만 원,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의 유족들 및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영식 _____